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이해

3/15/02
통일원 (333.510245)

전산필



9/17/02

2002

통일원
문화이해
통일원
문화이해

통일원

●●●●●●●●
차 례

제1편 통일문제의 이해..... 7

I. 머리말 / 9

II. 통일논의의 기본전제 / 10

1. 통일의 당위성
2.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III. 우리의 통일노력 / 17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대북정책

IV.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21

제2편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 이해 25

I. 서론 : 기본적인 전제들 / 27

II. 헌법적인 문화 이해 / 29

1. 대한민국 헌법의 문화 조항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문화 조항
3.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III. 북한의 문화 건설 전략 / 47

1. 사상·기술·문화혁명의 원칙과 내용
2. 북한의 '문화혁명' 정책의 역사적 전개

IV. 북한 예술-그 기본적 이해 / 62

1. 예술의 본질
2. 문학예술의 본성
3. 문학예술의 근본 문제
4. 예술의 혁명과 내용
5. 예술의 방법
6. 혁명가극에서 본 실제 사례
7. "대중문화" 비판

V. 결론 : 사회 정의와 문화 정책 / 85

참고문헌 / 91

제 1 편

통일문제의 이해

박 영 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머리말

동서냉전 체제가 끝나고 인간 생활의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탈냉전의 지역 질서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한 시대의 종언을 맞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와 국제적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 경직성으로 인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체제 유지를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문민정부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감한 개혁정책의 추진과 함께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민족도 새로운 역사의 창출을 위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 이후 그 어느때 보다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민족적 소망인 통일문제를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다듬은 후, 이를 차분하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II. 통일논의의 기본 전제

1. 통일의 당위성

우리에게 통일이란 명제는 더이상 하나의 이상이나 관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그것은 동서독이나 남북에겐 이 통일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통일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보아야 할 몇가지 이유를 들면¹⁾

첫째, 남한 사회의 발전이다. 남한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남한사회 내의 계급혁명과 공산화를 기도하는 북한의 목표는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며, 우리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은 우려로부터 자신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증거로서 통일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둘째, 국제 환경의 변화이다. 남한의 구소련(러시아) 및 중국과의 수교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추진으로 특징지워지는 동북아 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분단 구조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남북한이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1) 박영호·김도태, "통일환경의 변화와 「8·15 경축사」의 상황적 배경,"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4~17.

가 되었다.

셋째, 북한 사회의 변화가능성 증대이다. 북한은 동기유발 요인을 갖고 있지 못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고수해 옴으로써 경제적 피폐현상이 나타나고 주민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근래에는 통제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주민의 사회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더이상 남한 공산화 추진 전략에만 매진할 수는 없으며, 북한 내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외 개방과 사회 개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 체제의 개방·개혁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지도자 교체도 통일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민족 분단의 책임을 더이상 당사자에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과거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증오와 대립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협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 관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여 통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두지 않는 통일주

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417~432 및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장은 공허한 담론으로 끝나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³⁾

첫째, 남북한 주민들은 「하나의 민족」이다. 남북한의 7천만 동포는 같은 혈통에 같은 말과 글을 쓰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일구며 같은 역사를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이질화의 심화는 남북한 주민을 마치 다른 민족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민족간의 경쟁을 뛰어 넘어 남북한 주민이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더불어 살기 위하여 통일은 필요한 것이다.

둘째, 통일은 남북한 민족 성원 모두에게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통일은 바로 남한이나 북한 어느 일방만의 번영과 복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서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삶」을 살 수 없다.

셋째, 통일은 민족의 발전과 도약의 발판이다. 만일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분단이 영구화된다면 민족의 역량은 분산되어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민족의 용비를 기약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들과 접해 있는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 재결합하지 못할

3) 정용진,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33~37.

때 우리 민족의 재도약은커녕 조선말엽처럼 열강들의 각축속에 빠질 수도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한반도는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은 좁게는 동북아에, 그리고 넓게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인 것이다. 통일은 바로 우리 민족이 세계화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소명이며 실천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우리에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며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부정적 상황의 발생이나 전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2. 통일의 기본 철학과 원칙

(1) 기본 철학

통일은 단순히 분단되었던 국토, 정부 그리고 민족이 재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에 하나의 헌법, 하나의 정부를 가지는 단일 주권국가의 건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민족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됨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며 민족의 번영이 약속되도록 하는 통일이다. 또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시한 제반 정치적 기본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민족공동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통일은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북한의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획일화, 집단화하여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상적 통일을 하고, 하나의 정당으로 일원화된 정치활동을 펴며,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마저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제도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위한 명분 때문이지, 실제로 일반 국민 다수가 역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 인류 역사 발전의 맥락이나 오늘의 세계질서 재편과

정을 볼때 남한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중에서 어떠한 체제와 이념이 보편적인 가치로서 정당화되며 인간의 본성에 가장 알맞는 것인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찾아 낸 가치 있는 삶의 공통 분모인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더이상 이념 경쟁에 매몰되기 보다는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함께 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 통일 원칙

통일원칙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나 통일국가의 수립 절차를 협의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입장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원칙과 통일운동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달성해야 할 통일조국의 미래상 실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1970년대 이후 자주·평화·민주를 3대 통일원칙으로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분단을 막지 못했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쟁이나 어느 일방에 의

한 상대방의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통일에 이르는 길도 분명히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 우선 자주성의 원칙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남북한 스스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주성의 강조가 국제사회와의 고립적인 배타적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적 입장이란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의존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평화의 원칙이다.

통일원칙에서 평화란 바로 한반도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함으로써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무력전쟁이 되풀이되면 우리 민족이 영원히 파멸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무력이나 힘을 사용하여 강제로 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통일 원칙은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이나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평화 추구의 노력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원칙이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번영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하며, 또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또한 민주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통일정부의 형태, 정치와 경제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원칙으로 민주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며, 통일은 계급이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원칙을 통해서 만이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의 대단결을 달성할 수 있다.

Ⅲ. 우리의 통일 노력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0년대 이후 우리정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선

인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과 탈냉전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통일노력이 요구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이후 여러 계기를 통해 밝힌 통일정책에 대한 구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광복 49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토적·제도적·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자세로부터 적대감과 대립이 장기화됨으로써 훼손된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의 바탕 위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접근의 방식으로 그 주안점을 변화시켜 왔다. 즉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가 그것이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는 남과 북이 냉전시대의 산물(産物)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서로를 파괴·진복하거나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약속을 지켜가면서 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이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신뢰를 토대로 통합과정을 관리하는 단계로서, 남북간에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의 동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남과 북은 이 단계에서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또 남북연합에 공동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들 공동기구에서 국가 통합 즉, 정치와 제도의 통합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남북정상회의나 각료회의를 열어 동질화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거나, 남북의 의회대표들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셋째,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합의·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국가 수립이 곧 통일의 완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분단시대의 잔재로 인해 여러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정부 수립 후에도 온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명실상부한 민족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대북 정책

국민적 지지에 기초한 문민정부의 이점을 살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구사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타격을 받게 되었으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로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의 틀이 마련됨으로써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노력은 일단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북한의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남북대화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상회담 개최합의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북한도 이제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냉전의 껍질을 깨고 본격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자유·복지·개방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으로써, 남북한이 협력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함께 대북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인식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전문)이며,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1조)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도 이제 이념 대결의 틀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촉구하였다.

IV.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남북간 분단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결과가 한반도 분단의 영구 고착화 가능성의 증대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북한 경제의 부진과 북한 주민의 빈곤현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통일의 과제는 남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변국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 국제문제로 비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현 시점은 우리 민족에게 혼치 않은 민

족발전의 기회와 함께 우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가지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탈이념적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 관계가 이념대립을 지속함으로써 더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과 공영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유일한 선택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문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두 개로 나누어진 민족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빈칸으로 남았던 민족발전사의 공백 기간을 메우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주된 임무는 북한 주민보다는 남한 국민의 손안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 과정이 피와 땀을 수반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말해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통일에 따르는 부담이나 고통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통일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민족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간 통일은 정치·군사적 대결에 따른 어느 일방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세계사를 주도하는 일원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열강이 각축했던 구한말의 역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점이 중요한 통일과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대세 앞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통일역량」을 더욱 기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적인 「통일환경」을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제 2 편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 이해

김 문 환 (서울대 교수)

I. 서론 : 기본적인 전제들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문화적 차원에서 모색하려 함에 있어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기 이전에 이곳을 기본적인 생활터전으로 삼아온 한민족은 적어도 통일신라 시대 이후 단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통일신라 시대 이전의 삼국시대나 그 이전의 고대를 포함하여, 각각의 지역은 그 나름대로의 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지역감정과 융합한 채 과장되게 강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질성을 능가할 정도의 이질성이 지배적이지는 않았다.

둘째, 남과 북은 분단이후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열전과 냉전으로 인해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이를 기화로 다분히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키워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지배계층은 스탈린주의적인 개인숭배 사상을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아래 강화해 오면서 사회주의 일반이 지니는 공통적인 요소들마저 상당히 변경시킨 반면, 외세와의 밀착상태에서 권력을 유지해온 남한의 역대정권은 특히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를 강화하면서 천민자본주의적인 양상을 부산물로 산출해내기도 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양 체제의 기본 성격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체제의 상징이었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구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일대 변화와 맞물리면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요구에 어떻게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면, 남한 역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국민적인 합의와 그간의 경제지 발전이 지닌 상대적 우월에 힘입어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를 성립시켜 세계적인 격변과 도전에 대응하며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넷째, 이와 같은 대응방안 모색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원인들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게 된 한민족 구성요원들이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기나름으로는 그들이 한반도 내의 구성요원들에 비해 한민족이 분단 이전에 공유했던 동질적인 요소들을 더욱 많이 간직하고 있는 한편,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들과의 부단한 교섭을 통해 한민족공동체의 세계화 전략을 위해 값진 경험을 축적해 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전제하고라도 한반도 안의 두 체제가 적어도 적대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자면 우선 서로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기본전제와 아울러 특히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또 하나의 제안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일단 양 체제의 헌법에 나타난 문화이해로부터 출발코자 한다. 그

러나 헌법은 현실을 제약하면서도 다분히 이상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실에 좀더 밀착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문화정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3대혁명론에 기초한 문화혁명의 의미와 아울러 북한예술에 대한 미학적 이해를 각각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이해는 성급하게 동질성의 회복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질성의 인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비교를 통한 상호보완의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나의 결론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헌법적인 문화 이해

헌법은 굳이 사전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한 나라 또는 체제의 기초가 되는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 또는 체제의 특징을 알고자 할 때, 우선 그 헌법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믿음직한 접근방식일 수 있다. 물론 헌법은 다소간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접근방식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그 나름대로 옳다. 그러면서도 통일을 논의하자면 현재의 남북한 헌법의 비교를 바탕으로 통일헌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통일문화를 논의하고자 함에 있어서 일단 남북한 헌법에서 문화관련 조항들을 추려낸 후, 그의 미합축을 비교해보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에 이어 각각의 헌법을 좀더 근원적으로 재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상기해보게 될 것이다.

1. 대한민국 헌법의 문화 조항

우리 헌법에서는 우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제10조)는 요청도 광의의 문화와 연관된다. 그러나 좀더 한정해야 한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및 통신의 비밀(제18조)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든지,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및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이든지(제21조①, ②),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①) 및 저작권, 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규정 이든지(제22조②),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한다는 규정(제31조),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제34조①)가 문화적 권리에 속한다 할 것이다.

교육에 관한 규정을 좀더 자세히 살핀다면, 무상의무교육 실시·교육자주보장·평생교육진흥을 국가의 책무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확장된 문화개념을 감안한다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도 문화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개인적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정생활을 보장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36조 ①, ②)든지, 국가는 국민의 보건을 보호한다(36조 ③)든지 하는 규정도 북한의 문화이해를 참조한다면 문화와 연관된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개발에 전력할 책임이 있다(127조 ①)는 규정도 문화적 의의를 지닌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②)고 되어 있어 자칫 기본적인 인권의 “불가침”적 성격이 위협을 당할 위험이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②)든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제37조①)는 것이 하나의 이론적인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문화 조항

이 헌법은 그 기본구조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공민

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나, 국장 국기 국가 수도로 되어 있어 문화조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정치를 규정하는 장에서도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인 다(제9조)는 표현이 들어 있고, 경제를 규정하는 장에서도 기술문화(제23조), 물질문화생활(제25조), 농촌문화주택(제28조)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비교적 폭넓은 문화이해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규정에 있는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제42조)는 문장 역시 문화혁명의 본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를 규정하는 장은 제39조부터 57조까지 모두 19조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한다”(제39조)든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텔리화한다”(제40조)든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부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제41조)든지 하는 표현들은 일단 문화의 목표를 설명해준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제41조)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속에 교육을

중점영역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함축시킨다. 교육의 목표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간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우는 것으로서(제43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 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운다”(제44조)고 그 방법론적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제46조).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제48조)는 그 뜻이 읽혀진다.

또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명시하는데, 학교전 의무교육을 뜻하는 유치원과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제49조)고 못박고 있다.

문화에는 또한 과학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즉, “국가는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시킨다”(제51조)는 규정이 문화를 다루는 제3장 속에 들어 있다.

그뿐 아니라 보건도 여기에 속해 있다.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 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제56조)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제57조)는 환경규정을 문화의 맥락 속에 넣고 있다.

그밖에 언어와 체육도 문화규정 속에서 다루어진다.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제54조)든지,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 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 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제55조)든지, 하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체육을 집단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인다.

불론 예술이 여기에서 제외될 수 없다.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제52조)라는 창작적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제63조)는 규정과 연결될 때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읽히는데,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제52조)는 귀질과 짝을 이룬다.

즉, 창작을 일반적인 문화생활 참여와 묶어서 이해하려는 입장이 두드러지는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제53조)는 규정이 바로 문화 참여와 연관된다.

이밖에도 제5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비교되면서, 문화와 관계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신앙의 자유(제68조), 언론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제67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73조),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보장(제78조)이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제64조)는 조항의 문화적 내용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기본권리들은 남북한 헌법에서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제82조)라고 보는 북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의식은 세계적으로 이해되는 사회윤리 또는 새롭게 대두되는 지구윤리와 상응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제약들을 앞세우고 있다.

예컨대 신앙의 자유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되지만,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제68조)는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

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제79조)는 규정도 바로 앞에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데, 이 때 사회주의가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결국 북한이 문화조항을 좀더 자세하게 규정하여 헌법 속에 넣고 있다든지, 문화가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예술·체육 등을 포괄하는 광의로 해석된다는지(물론 행정적으로는, 정무원에 대한 규정중 “교육·과학·문화·보건·환경보호·관광 그밖의 여러 부분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에서 보이듯이, 여타부분과 병렬되면서 문화가 예술을 중심으로 한 협의로도 쓰이고 있다.)하는 등등의 차이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양자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통일헌법의 기초를 닦아가야 한다. 이는 결코 문화만을 떼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두 헌법 내지 체제를 객관화함에 있어서 유효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네스코가 검토한 문화적 권리의 내용을 요약해보도록 한다.

3.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과거에는 문화가 종종 개인의 정치적 권리, 종교적 자유 또는 의견

과 표현의 자유의 틀 속에서 논의되었다. 정치적 권리들의 선점에 이어 '경제적 권리들', 즉 일할 권리, 여가에의 권리, 사회보장에의 권리 등등의 인정이 뒤따랐고, '문화적 권리들'의 개념형성이 그 뒤를 따라야 했다.

'문화적 권리들'에 관한 현재의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산업화와 기계화를 포함하여 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인류가 보다 많은 여가를 획득하게 되자 물질적인 사물들에 덧붙여서 창조적 활동을 통한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이 실감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휴머니즘이 출현했다고나 할까?

더군다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국가들의 경우, 이 독립은 민족자결에의 정치적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존엄의식, 과거로부터 전래되어 온 생각들을 찾는 새로운 탐색, 식민통치 이전 또는 그 기간 동안에 자주적으로 선호되었던 예술형식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근세기에 들어서 그토록 자주 빈축을 샀던 전통문화들을 재건하기로 한 결정, 또는 새로운 토착문화들을 도시화와 산업화의 맹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결정 등등을 포함하였다. 나아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책,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과 잡지 등을 접촉하게 되면서 세계 도처에서 다른 문화들과 어울려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는 풍부한 문화적 과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다.

이 모든 것들에 우선하는 것이 바로 '문화'가 더 이상 소수의 특권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 가치들의 다양성, 심지어는 한 국가 안에서조차 발견

되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다. 이는, 인류를 이제까지 지배적이던 종족을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전체 인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각자를 창조와 참여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주고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인정하는 20세기적 경향의 한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공포된 이래, 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일반 토의들은 문화 참여와 문화 창조 양자를 모두 참작하는 방향을 취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연구는 한 사회 속에서도 여러 문화적 변종들 또는 ‘하위문화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들이 사회적 계층구조와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청소년 문화도 그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랬을 때, 하위문화들이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들, 도시화와 산업화의 필연적 결과인가? 농촌 및 도시의 문화적 가치들과 활동들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배적인 문화가 특정한 ‘하위문화’의 가치들을 역기능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고려되어 온 다른 가치들이나 문화적 산물들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상황들 속에서, ‘문화적 권리들’의 의미란 무엇일까? 등등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문화를 민주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새로운 연구영역이 개방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

로 사회·경제적인 조건들, 활용가능한 여가시간의 총계, 또는 교육에 의존하는가? 그것이 어느 정도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형식을 갖춘 책, 레코드 또는 영화에의 접근에 의해 영향받는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저작권, 도서관, 그리고 특수한 수장품들에의 접근이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주요한 미술관 또는 박물관들의 위치, 입장시간, 가격 등에 의해 그러한 접근은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되는가? 예컨대 ‘참여’는 공동체 센터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얼마만큼 연관되는가?

그러나 특정한 시설들이 무료이고 이미 활용 가능한 곳에서 조차 그것들의 이용이 공동체의 여러 부분들에 따라 상이하다고 했을 때, 문화적 접근은 과연 사회적·경제적 요소들과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부상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라는 항목으로 따로 떼어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들에 관한 1968년도 유네스코 국제회의의 결론을 소개함으로써 이를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한다.

(1) 1948년 선포된 인권선언은 인간적 권리들에 관한 우리의 생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세계는 지난 20년 동안 매우 급격한 변화들을 목격해 왔다. 선언의 정신은 이러한 변화들을 잘 견디어 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 혁명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의 정치적 해방은 새로운

전망과 오늘날의 인류가 느끼는 절실한 필요들에 부응하도록
기술과 의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2) 문화는 정의하기 어려운 인간 경험이지만, 우리는 그
것을 인간 생활을 위한 설계들을 창조해낸 방법들의 총체로
서 인식한다. 그것은 사람들 간의 소통과정이다. 그것은 사
람됨의 본질이다. 수백만의 남녀들이 그 단어의 고전적 의미
에서 문화의 결실들을 오히려 빼앗기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유산들이 소수의 특권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유산이 국내적 또는 국제적 엘리트에
의해 조직되고 보급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간에 문화적 가치들, 확신들과 형식들의
다양성은 완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평화이므로,
문화적 상호관계의 주요 기능들 중 하나는 사회 생활에서 전
쟁을 불식하는 것이다.

(3) 오늘날 우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
는 현실을 장악케 할 수 있을 살아있는 문화를 필요로 한다.
풍요의 수단들을 소유한 세계 속에 아직도 광범하게 잔존하
는 빈곤은 인권의 완전한 신장에 대해 비극적 장애가 된다.
이러한 불평등적 분배는 빈곤이라는 손실에다 도덕적인 모욕
마저 첨가하면서, 충실한 생활을 더욱 방해하는 그릇된 가치
들을 산출해 낼 수 있고, 실제로 종종 그러하다. 풍요는 인

간의 작업과 잠재능력을 배타적으로 판단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문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 속에서 활동적이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소통을 위한 모든 표현 형식들을 더욱 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

(4) 소비사회가 문화에 강요하는 획일성과 그릇된 표준들과 가치들을 광범하게 광고함으로써 문화를 빈곤하게 만드는 것을 기술혁명과 산업화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있다. ('소비사회'라는 말로써 우리는 필요 이상의 수준에서 행해지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소비를 의미한다) 국가들과 그 국가들을 연결하는 사회 경제적 구조들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고, 생명력있는 문화적 발전을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답들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5)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를 빼앗긴 사람들로부터 폭력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과학 기술의 혁명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적 사고와 행동에서의 혁명을 필요로 한다. 전 세계에 걸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문화적 권리들은 그들의 빈곤, 질병 그리고 문맹으로부터의 해방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들은 외국의 군사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강압을 통한 개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

다.

(6) 우리가 사는 세계의 특징들 중 하나는 국경선 안과 밖에서 문화적 획일성과 동질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들에 의한 인간지배이다. 그러한 문화적 획일성과 동질성은 그러한 사회들의 지배집단이 지닌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들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능하다. 우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적 전통들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내야 한다. 문화적 전통들의 풍부성은 사람들에게 응집력이 있는 집단들에 대한 소속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종종 인간들을 조직화된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는 세력들에 대항하여 인격적인 정체 의식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7) 우리는 어떤 공동체나 대중매체의 첫째가는 필수적 의무는 그 공동체를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소통은 일방통행적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회변화의 지속적인 과정을 인식하도록 사람들에게 현재와 과거를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또한 권력의 중심에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소원들을 알려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봉사해야 한다. 대중매체의 두번째 권리는 인간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사람들 사이에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창출되도록 다른 공동체들과 접촉케 함으로써 이 학습과정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또한 일방통행적이어서는 안된다.

(8) 알 수 있는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다. 우리는 사회질서와 안정성이라는 관념들 속에서 소통 매체들의 일부가 규제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소통 매체들은 정치적 또는 문화적 통제의 무기 또는 도구로서만 간주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①전 세계에 걸쳐 동시대적 사건들에 관한 정보의 충실한 유통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과학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그 밖의 창조적인 인간들의 작업이 가장 광범하게 유통될 수 있고 개인들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발전되어야 한다; ③그리고 수용자로서 참여자로서 개인이 이러한 소통 원천들(예컨대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행정당국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9) 알 수 있는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서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예술가들의 공동체와 공중이 좀 더 친밀한 상호관계를 맺게해 주는 기회를 증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 때 공중이란 아직 예술적 창작과 향유에 관여되지 않은 무리들을 지칭한다. 이는 창조적 공동체와 수용적 공중 사이에 좀 더 집중적인 대화와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세계를 끊임없이 바꾸어 놓고 있다. 이 변화는 장대하고 포괄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 과정의 의의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학, 그리고 그 결과들의 적용이

모든 인간의 문화적 배경을 형성해 나갈 것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과학교육이 모든 개인의 지적 장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함과 동시에 그것이 오로지 인간을 위한 봉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향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11) 문화적 권리들은 모든 사람이 인간적 가치 창조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그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이로써 그로 하여금 지역적 범위가든 세계적 범위가든, 자신의 상황을 위해 책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열거된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들에 관한 내용은 인간의 마음 속에 평화와 이해의 개념을 강화하고 공격성과 전쟁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 중 하나의 지름길로 거론된 것이거니와,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들' 회의 당시(1968. 7. 8 ~ 13.)만 해도 문화민주주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에도 이른바 '비-관중' (non-public)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전대 연극공연과 연관시켜 말한다면, 좌석 가격의 인하, 광고방법의 개선, 제안된 공연들을 보다 접근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특정한 흥행 기술들에의 호소 등등 온갖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숫자에서 별로 차이가 생겨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서, 이 '비-관중' 에로의 전환이라는 발상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 때 '비-

관중'이란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는데, 극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증가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전통적 문화에서 제외되어 온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개인적 필요들과 특수한 요청들에 따라 스스로를 개발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객관적으로 정의된 이 '비-관중'에 덧붙여서 특정한 주관적 기준을 조화하지 않으면 완전히 정의될 수 없는 또 다른 유형의 '비-관중'이 언급되고 있었다. 그것의 출현은 아주 최근에 이루어졌던 바, 그들의 지적 훈련은 그들을 지배적인 사회계층의 지위에까지 육박시키고 있으나, 그들 자신이 부조리하다고 비난하는 사회체계에 문화적으로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좀 더 농후해지고 있는 청년층(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이에 속한다. 1968년이면 유럽이 이른바 청년문화 또는 학생혁명의 격랑 속에 휩쓸려든 때이고 보면, '비-관중'의 범주 속에 이들이 포함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72년의 '유럽에서의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 회의'를 거쳐 1970년대 말에 이르는 동안 세계는 차츰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성숙시켜 오고 있었던 바, 우리는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는 잠재적으로 두 가지 요청에 근거한다. 즉, 고급문화만이 공인된 가치로서 보급될 값어치가 있고, 또한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파악된 무차별적인) 문화 소산과 대중 사이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원칙은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에 대한 특혜와 중앙에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의 지방문화에 대한 우선권을 허용한다. 그 반면에 '문화민주주의'는 특정한 부분문화들의 자기표현을 증진시키고 상호 소통매체들을 통해 그것들을 좀 더 보편적인 다른 부분 문화들과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문화민주주의는 비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 즉, 이루어져 가는 문화보다 이미 이루어진 문화를 제공하며, 관중보다 작품 자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경직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기피하는 경향을 낳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적 자기규정적(자율적) 존재를 중심적 표지로 삼는 '대안문화'라는 개념과도 상통하면서, 기존의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취하면서 예술 및 문화의 사회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고유한 실천을 통해 일상문화적 교류 및 매개형식들의 창출이라는 특징을 나타내는 문화민주주의적 발상이 주로 청소년들의 행동양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부분 문화의 자기표현 욕구를 중시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 정책상의 이 양대 주류가 양자 배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만일 남

한의 문화정책이 좀더 '문화의 민주화'에 가깝고, 북한의 문화정책이 좀더 '문화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역시 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양자를 사회정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게 될 것이다.

Ⅲ. 북한의 문화 건설 전략

앞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문화 이해를 헌법을 통해 살펴보고, 통일을 지향코자 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관련하여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를 개진해 보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한의 지향과 현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도 글의 마땅한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독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속에 살면서 그에 입각한 문화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는 경험을 통해 문제점들마저 체득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시선을 북한 쪽으로 모아보는 것도 과히 어긋난 시도는 아닐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 헌법은 정치를 규정하는 장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린다"는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는 3대 혁명과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 혁명의 의의를 알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북한의 혁명이론에 따르면 3대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지난 날 자본주의 단계를 거친 나라들에서도 해야 하지만,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었던 제3세계 나라들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즉 사상, 기술,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는 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예속에서 해방된 나라들에서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3대 혁명은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이 새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 시기부터 시작된다. 첫 시기인 민주주의 혁명시기와 사회주의 혁명시기에는 사회제도를 개조하는 것이 기본 혁명과업으로 제기되고 3대 혁명은 주로 식민지적·봉건적 착취관계의 청산과 넓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된다. 즉 봉건사상 잔재와 제국주의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사람들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며 그들을 문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일반적 문화지식 수준을 빨리 높이는 것이다.

3대 혁명이 기본 혁명과업으로 전면에서 제기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다음부터이다.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나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는 여전히 낡은 사회의 유물들이 남아있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사회에는 계급적 차이와 노동조건에서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즉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3대

혁명이 기본 혁명과정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1. 사상·기술·문화혁명의 원칙과 내용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에 따르면 3대 혁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인간개조에서 기본은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 것이며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불러 일으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각각의 혁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상혁명이란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사상 정신적 풍모를 훌륭히 갖추게 하는 것이다.

기술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생산 실천에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체득하게 하며, 이론적 지식과 실천을 결합시켜 지식을 공고히 하고, 실천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노동생활조건을 근본적

으로 개선함으로써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능력을 겸비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힘있는 존재로 사람들을 키워낸다.

문화혁명은 근로자들의 일반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여 그들을 능력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것이다. 문화혁명에 의하여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진 문명한 인간으로, 전면적으로 발전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자라나게 되며, 또한 문화혁명에 의해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문화가 건설되어 근로자들의 문화적 수요가 완만하게 충족된다.

문화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과학기술과 문학예술 등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체육사업과 보건사업을 발전시키며, 민족어를 발전시키는 것도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으로 규정된다. 끝으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 것도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주요 과업으로 파악된다.

2. 북한의 '문화혁명' 정책의 역사적 전개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하여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의 힘있는 개조자,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만들며, 인민대중

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분야에서의 혁명적 변혁으로 규정되는 문화혁명, 북한의 3대 혁명론에 의하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등 노동계급의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따라 필수적 과업과 실현조건, 한 단계의 과업에서 다음 단계의 과업으로의 이행의 내용 등에서 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된다.

(1)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시기 (1945.8~1947.2)

지난 날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3대혁명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노동계급의 당이 주권을 잡고 새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된다.

이 시기 북한의 당정책은 3대혁명을 적극 별리어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창조적 열의를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으며, 더불어 근로자들의 문화지식 수준을 높여 인민의 소유로 된 공장, 기업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움직여 나가고자 하였다고 주장된다.

민주주의혁명 시기에 북한에서 수행된 3대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혁명이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사상혁명의 주요과업은 근로자들을 민주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 새 민주조선의 일꾼다운 정신과 품모, 도덕과 전투력을 가진 인간으

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봉건사상 잔재와 제국주의 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했다고 한다.

이처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주된 사상적 독소로 작용하는 봉건적 사상잔재와 제국주의적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민주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사상혁명의 기본 과업이라고 규정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당정책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라는 형태로 제시되고 구현되었다.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시기에 3대혁명의 하나로서 문화혁명도 북한의 당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혁명의 내용은 그때 그때 혁명의 발전단계와 사람들의 문화수준 정도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시기에 북한의 당정책은 근로자들 속에서 문맹퇴치운동을 힘있게 벌여 그들을 무지와 몽매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반적인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물질적 준비를 하며,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세우는 것을 문화혁명의 기본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당 문화정책은 우선 이전의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미신행위와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기 위해 여성들을 인신적으로 구속하는 낡은 생활인습을 근절하고자 하였다. 특히 1946년 7월 30일에 발표된 남녀평등권 법령은

여성들을 인식적으로 구속하던 낡은 생활습관을 없애기 위한 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2)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1947. 3~1960)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계속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게 된다고 주장되면서 여기서 사회주의 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사적 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전환시키는 심각한 변혁과정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보다 높은 계급의식과 문화수준을 요구한다고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사상혁명의 기본내용은 사회주의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 즉 사람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의 내용은 사람들이 착취계급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주의적 근로자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는 봉건사상 잔재와 제국주의사상 잔재가 직접적인 투쟁대상으로 되며, 민족부르조아지나 소부르조아지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은 직접적인 투쟁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나, 사회주의 혁명단계에서는 모든 착취계급의 사상이 직접적인 투쟁대상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 시기 사람들을 사회주의 사상을 무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계급

적 자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 대중의 계급적 자각을 높여야만 근본적인 사회적 변혁인 사회주의 혁명의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또한 이 시기 사회주의 사상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 정신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동강리는 사람들 자신이 집단주의 정신을 소유하는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파악되었다. 사람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집단의 이익 속에 개인의 이익도 있으며 공동의 재물속에 개인의 몫도 있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도록 하며, 집단을 사랑하고 공동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이 시기 사회주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시기에 진행되는 문화혁명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시기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에서 새롭게 진행된다고 주장되었다. 이 시기 문화혁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인민대중의 문화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당정책은 이 시기 전반적 중등무료 의무교육을 문화혁명의 중요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1958년 11월 1일부터 전반적 중등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또한 더불어 고등교육기관을 빨리 늘리고 고등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빨리 육성하는 데에도 주목하였다

고 한다.

이 시기는 또한 능력있는 기술자와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기술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북한의 당정책은 특히 성인교육 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수준을 인민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 북한의 당 문예정책은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의 하나라고 파악하면서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불러 일으키며, 인민들에게 문화정서생활을 보장시켜주고자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문화정책은 우선 문학예술 창조와 그 보급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일러진다. 극장과 영화촬영소를 비롯한 문화예술기관과 시설들의 복구건설을 인민경제계획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그 사례로서 예시된다.

북한의 전후 문학예술 발전에 저해를 준 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히무주의 등의 요소들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해 작가·예술인들 속에서 당정책 교양, 혁명전통 교양이 강화되었다. 또한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등 모든 종류의 민족문화예술 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수집하고 비판적으로 연구·계승하기 위한 일련

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사회주의 혁명시기 문학예술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을 근로자들에세 올바르게 인식 시키며 그들이 확고한 노동계급적 관점을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있다고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북한의 당 문예정책은 사회주의혁명에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 작품들을 보다 많이 창작하는 데로 지향되고 있다.

(3)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기(1961~현재)

사회주의혁명이 성취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새로운 사회역사적 조건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사상적, 문화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고 한다.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를 청산하고 공산주의적인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는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 요구로 파악된다.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고도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지닌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당정책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사회의 모

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것이 이 시기의 3대 혁명의 중심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당정책은 이 시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방향에서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사상혁명의 주요과업으로 설정하였다.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에 북한의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의 중심사업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노동계급화한 기초 위에서 그들을 대학졸업 정도의 문화기술 수준을 지닌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었다.

북한의 문화혁명론에 따르면 온 사회의 인테리화라는 것은 우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함께 높은 문화지식수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현대적인 기술, 높은 문화적, 예술적 소양을 지니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인 요구라고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는 우선 사람들의 문화생활에서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다. 사람들이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 때, 즉 모든 사람들이 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될 때에 비로소 인류의 이상인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문화의 참다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문화기술 수준의 소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산주의 사회는 또한 사람들의 노동생활에서 완전한 자주성이 실현된 사회이다. 즉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가 없어져 사람들이 힘든 노동과 낮은 분업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그리하여 노동이 참으로 흥미고 즐거운 것으로, 생활상의 일차적인 요구로 될 때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문제도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게 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 것은 또한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그 역할이 마상히 증대하고 있는 현 시기의 특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수적 과업으로 된다고 한다. 높은 과학기술 지식수준은 우리 시대의 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모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그리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대중 모두가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만 현실적 요구에 맞게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전진시킬 수 있으며, 경제 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빠른 속도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은 우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파악되었다. 특히 전반적 11년제의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여기서의 중요과업은 전인민 고등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파악되었다. 전민고등교육

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대학수준의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시기의 북한의 당 문화정책은 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위하여 문학예술과 방송출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우선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으며, 문학예술의 향유자이며 창조자인 근로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예술적 재능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를 지향하였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극장, 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의 증대하는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당 문화정책은 또한 보건사업과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이 분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 과학 지식, 기술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체육과 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 시기 인간 개조 사업의 기본 내용으로 되며, 문화혁명의 주요 구성 부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기 문화혁명 수행에서 중요한 과업은 또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라고 파악되었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운다는 것은 생산환경과 생활환

경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생산활동과 모든 생활을 규율있고 질서있게 문화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규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당정책은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생산환경을 깨끗이 하고, 생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모든 근로자들이 개인 생활로부터 공중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일상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려나가도록 독려하였다.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활동방식, 생활방식으로서의 문화의 중요한 형태이다.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이며, 사회주의 문화의 중요한 형태이다.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본질적 특성은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은 철저한 노동계급적 생활양식이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양식이라고 주장된다.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은 낮은 생활양식을 없애며 사람들에게 선진적 사상을 채득하고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문화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생활환경을 알뜰하고 집소하게 꾸리며, 언제나 문명하고, 낙천적이며, 정서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중요한 요구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주장된다.

70년대 초에 노동당은 문화혁명을 포함한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3대혁명의 특성에 맞게 그것에 대한 지도방법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주도하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와 더불어 3대혁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으로서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3대혁명의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실무적으로 준비된 당 핵심들과 청년 인테리들로 구성된 3대혁명 소조원들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요구인 근로자들의 기술지식 수준을 높이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농촌에 파견된 3대혁명 소조들은 농촌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생활습성과 관습을 뿌리뽑고 그들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고히 수립해 나가도록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였으며, 농촌집들과 마을들을 문화적·위생적으로 만드는 등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 왔다고 주장되고 있다.

북한의 당정책은 3대 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높은 형태의 대중적 사상개조 운동, 기술개조 운동, 문화개조 운동으로 규정하였다. 이 운동에서 북한의 당 문화정책은 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테리화하고, 그들에게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투쟁목표로 내세웠다. 더불어 북한문화정책은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문화혁명의 결의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근로자들의 낡은 생활양식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으로 개조하도록 선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IV. 북한 예술 - 그 기본적인 이해

북한의 예술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요약된 문화혁명에 대한 이해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북한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접근은 자칫하면 동어반복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특히 3대혁명의 제3시기, 즉 1961년 이후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술작업들이 1990년을 넘어서면서 이제와는 다른 색채를 띠면서 우리가 지녀온 고정관념에 다소나마 도전을 가해오는 듯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북한 예술에 대한 미학적 이해를 전반적인 관점에서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미학적이라고 한 이유는 좀더 원론적인 이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작품이나 장르가 아니라, 예술일반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설명을 참조해 보자는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우선 예술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데,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가 1991년에 펴낸 『미학개론』(김정본 저)은 그것이 미학과 문학예술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인정한다. 즉,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이 참으로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거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문화예술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기본 입장, 즉 주체사상에 따르자면 예술은 현실 반영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공산주의 인간학이라는 본성을 지닌다.

1. 예술의 본질

예술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김정일의 어록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같은 인간을 다루면서도 인간과 그의 사회적 관계를 추상화된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와 같은 생동한 현상으로 그려내는 데 문학이 다른 사회과학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술을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현실을 형상적으로 반영한다는 이러한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일단 레닌의 예술이론을 연상케 할 뿐 아니라, 반영이론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

서도 예술을 보편성을 조준하는 학문과는 달리 전형을 통해 보편성과 개별성을 매개하는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루카스적 해석과도 비교될 만하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학예술이 <전형적 인간의 산 모범>을 배우고 따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준다고 설명되면서 결국 개인승배로 연결되고 만다.

북한의 미학에 따르자면 “철학이나 예술학을 비롯한 과학은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이지만, 여기에서 현실반영은 <개념을 통한 논리적 형식>으로 진행”됨에 반해, 예술에서 사람을 반영할 때에는 추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인간을 현실 모습 그대로 반영한다. 예술은 사람을 반영할 때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특징들은 모두 사상해버리고 고도로 추상화하여 그 본질적 특성만을 반영하는 철학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현실을 그대로 복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사전작품이다”라는 단정에서 율허지는 형상화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가 주목받을 만한데, 그것은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의식을 불질적 형식에 담아 객관화해 놓은 것”이라는 예술작품에 대한 규정과 상통한다. 이렇게 해서 형상화란 “현실의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대상을 <비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된다.

요컨대 과학적 반영에서는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추상화하여 반영함에 반해, 예술적 반영에서는 “개별적 형상의 구체적인 것에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재현시켜

반영한다”. 이 때 “개별적인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원형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예술적 형상으로 그려진 대상은 “창작가의 사상 미학적 대상으로써 예술적으로 가공되고 일반화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학은 예술적 형상이 먼저 일반화에서부터 예술적으로 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개성화를 도모하여 그와의 통일 속에서 예술적 일반화를 실현함으로써 예술이 현실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을 극복한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강한 침투력을 갖고 대중교양에서 그 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즉, 문학예술은 “실용예술과 달리 인간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인간문제를 제기하여 산 인간의 생동한 <모범>을 통하여 그것을 전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헤겔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예술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노동계급의 예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예술에 와서 비로소 과학적 토대 위에서 해명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의 미학은 이것조차 하나의 선행한 노동계급의 미학이론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이 “인간을 사회 관계의 총체로 보았으며 사회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을 형상의 중심에 세우고 인간과 그 생활을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진실하게 반영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으나, “인간의 본성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예술을 반영론적 입장에서 취급하였던 것으로 하여 예술이론을 완성시키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 오로지 “주체의 미학이론”만이 예술이론을 “사람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완

성” 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학예술을 인간학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연관된다.

2. 문학예술의 본성

예술을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예술의 본질적 특성을 “그 사회교양적 기능의 측면”에서 규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김정일의 어록이 인용된다.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 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인간학이라는 의미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가며 참다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인간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교과서를 말한다”.

이런 뜻에서 오직 인간과 그 생활을 전면적으로 그리는 문학예술만이 인간학으로 될 수 있다고도 말해진다. 즉, “문학예술적 형상의 중심에 인간을 세우고 의의 있는 인간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교훈을 주며 참되게 살아 나가게 한다”는 설명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주체의 미학이론”의 핵심인 셈이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묘사도 인간 생활과 밀접히 결부되고 인간문제 해결에 복종할 때에라야 참다운 인간학으로서의 의의를 갖게 된다. “순수 자연만을 찬미하는 예술은 현실반영 형식으로서의 예술로는 될 수 있으

나 인간학으로서의 참다운 예술로는 되지 못한다”.

결국 “문학예술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취급하면서도 생산적·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옳은 예술적 해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인간을 교양하고 불러 일으키는 인간학”의 핵심인 셈이다. 북한의 미학은 문학예술로 하여금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간 성격과 인간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투쟁과 삶의 참된 길을 찾게 하며 보다 아름답고 보람찬 생활을 위하여 떨쳐 나서게 한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게 되고, 바로 여기에 문학예술을 인간학이라 일컫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3. 문학예술의 근본 문제

이와 같은 전제에 따르자면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근본문제는 “형상에 대한 견해와 관점에 관한 문제와 형상방식에 관한 문제”로 요약된다. 북한의 미학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즉, “사람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가, 아니면 사회관계의 총체로 보는가”하는 데서 스스로가 선행한 노동계급의 이론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을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여 나가는 인간문제로 보는가, 아니면 사회경제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존재로

펼쳐 보는가”가 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김정일의 어록이 다시 한번 인용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그들이 말하는 주체의 인간학은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치적 자주성을 지키며 정치적 자주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기 위한 투쟁과정에 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밝힌다”는 것을 가리키게 된다. “우리시대,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며 일하는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설명은 예술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설명에서도 근간을 이룬다.

4. 예술의 형식과 내용

다른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김정일의 어록으로부터의 인용이 중심을 이룬다. “내용과 형식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푸는 것은 사실주의 예술에서 기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문학예술의 역사는 내용과 형식의 견지에서 볼 때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탐구하며 창조해온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주의와 형식주의로 갈라지는 분기점도 바로 예술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생활의 법칙에 맞

게 구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예술을 해부학적으로 고찰한다”는 표현을 활용하면서 이들은 예술의 내적 연관을 밝히고 예술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내용과 형식문제에 적용한다. 예술에서 무엇을 어떻게 형상화 하겠는가 하는 것은 곧 “예술의 내용을 어떻게 꾸리고 그것을 어떤 형식에 담겠는가”하는 문제로 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예술사의 해명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바, 예술의 내용을 현실생활로 보는가, 아니면 순수정신적 산물로 보는가에 의해 사실주의와 반사실주의가 갈라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예술”이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예술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만 보지 않고 구체적인 예술작품으로 보는 경우, 예술의 내용은 “창작가의 세계관과 사회미학적 이상에 의하여 선택되고 평가되어 작품에 반영된 현실생활”로 여겨진다. 이 경우 반영되는 현실생활은 예술의 대상으로 될 뿐, 아직 예술의 내용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예술 작품에 반영되지 않는 대상은 아직 예술상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을 예술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창작가의 미학적 이상이 전혀 도외시되고 아무런 분석과 평가 없이 현실생활을 그대로 옮겨놓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심한 자연주의적 성향” 내지 “형식주의”라고 한다.

형식주의란 “예술의 내용에 대한 관념론적 견해를 비판하

던 나머지 창작가의 주관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되는 반사실주의적 경향이란 “예술의 내용에 관한 속류 유물론적 견해를 비판하던 나머지 현실생활을 무시하고 창작가의 사회미학적 이상만을 절대화할 때” 떨어지게 되는 경향을 말하는 바, 예술을 창작가의 사상적 견해로 대체시키는 오류라고도 지적된다.

이렇게 해서 예술작품에서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즉, 예술작품에서 내용은 “예술의 대상으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창작가들에 의하여 선택되고 평가되어 작품에 반영된 구체적인 산 인간과 생활”인 반면, 형식이란 “작품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창조된 다종다양한 전반적 구조”, 즉 “내용의 결합방식, 구조”를 말한다.

현실반영으로서의 예술에서의 내용과 형식을 작품 안에서의 내용과 형식과 분리하려는 이러한 설명방식은 분석미학적 성과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용이할 듯한데, 분석미학에서는 예술작품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중에 내용(content)과 제재(subject matter)를 구별하면서, 내용은 예술작품의 구성요소이지만 제재는 그와 연결되어 있으나 예술작품에 외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북한미학에서는 생활소재가 창작실천에서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이루지만, 창작가들이 작품에 반영하기 위해 골라잡은 생활자료로서 그 자체가 내용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는 내용의 기본요소를 주제와 사상으로 나누어보는 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제는 창작가들이 말하려는 기본 문제로서, 예술작품에서 창작가들이 무엇을 보여주며 그것을 통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를 결정한다. 즉, 창작가가 그리려는 생활의 범위와 해명하려는 문제성의 두 측면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술의 주제도 크게 두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구체적인 작품의 내용의 체계 안에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와 “구체적인 작품의 내용의 체계 밖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혁명전통 주제라고 할 때의 주제는 작품 안에서의 주제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예술의 사상은 창작가의 세계관과 사회미학적 이상에 비추어 예술작품으로 반영된 사상인 바, 일반정치생활에서의 사상과 달리 표현된다는 것이다. 즉, 형상과 성격 속에 구현된 사상으로서는, “메마른 개념으로서의 사상이 아니라, 감정과 결합된 사상”이다. 예술의 사상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식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예술밖에 노출된 사상이 아니라 형상 속에 있는 사상”, “내용의 전반에 관통되어 있는 사상”으로서 예술의 내용을 사상적 내용이라고도 하는 까닭이 여기 있게 된다.

예술작품의 형식을 이루는 기본은 조직방식으로서의 구성과 예술적 언어인데, 여기에는 “작품의 내용의 조직방식인 구성”과 “내용을 표현하는 물질적 수단”이 포함된다. 분석미

학의 경우에는 물질적 수단의 측면을 재료(material)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소간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색, 음 등의 매체(medium)로 구별함에 반해, 여기에서는 그것이 “예술적 언어”라고 불리면서 형식과 연결되어 있다. 즉, “예술은 물질적 수단인 언어예술의 도움에 의하여 내용을 표현한다”는 것인데, 예술적 언어는 다만 예술의 내용을 표현하는 체계 안에서만 예술의 형식으로 되어 그 자체는 예술의 형식으로 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써, 재료를 예술작품에 외재하는 것으로 보는 분석미학과 흥미로운 유미관계를 보인다.

예술적 언어는 예술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특수한 물질적 수단으로서, 독자·관중의 감각기관에 작용하여 구두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현실생활을 그들의 머리 속에 생생히 재현시키며 창작가의 창작적 의도를 관중들에게 파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와 같은 내용과 형식은 물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김정일로부터의 인용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모든 사물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 예술작품에서도 내용과 형식은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내용을 떠난 형식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지 못한 내용도 있을 수 없다. 내용은 형식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형식은 내용에 따르면서 그것을 표현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증법적 관계”에서 “결정적인 것은 내용”이라고 함으로써 스스로 내용주의 미학의 후계임을 감추지 않는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목적에 수단이 따르고

그에 복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예술의 형식은 어디까지나 “내용을 성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것은 철저히 내용에 복종되어야 한다”. 형식에 대한 내용의 주도적 역할은 개별적 예술작품들에 있어서도 뚜렷한 바, 언제나 예술의 내용을 충실하게 꾸리는 데 모든 것을 집중시켜야 하고, 그래야 예술이 “사람들에게 혁명사상을 심어주고 투쟁경험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예술의 형식은 내용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상대적 자립성을 가지고 내용에 적극 반작용하여, 자기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 발전한다고 설명된다. 거기에는 예술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 재료의 특성도 작용한다.

이와 같은 상호관계의 이상은 “혁명적이고 진실한 내용과 아름답고 고상한 예술적 형식의 완벽한 통일”이다. “예술의 내용이 보다 진실하고 선명할수록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도 풍부하고 완전하게 된다”든지, “창작에서도 종자를 똑똑히 골라잡고 내용을 아담하고 선명하게 추리게 되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풍부한 형상적 형식이 떠오르게 되며 세련된 예술적 형식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든지 하는 설명도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통일을 위한 것이다. 이런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대작주의”가 결과된다는 비판적 입장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은 “내용에 비하여 형식이 비대하거나 내용 없이 그 폭을 넓히려고 하는 현상”으로서 “빈약한 내용의 빈구석을 메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설명된다.

이와 같은 유기적 통일은 “창작가들의 의식적이고도 진실한 탐구의 결과”이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주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용으로부터 형식을 분리시키고 내용을 형식에 복종시킴으로써 사상에술성을 파괴하는 반동적인 문학예술조류”이기 때문이다.

5. 예술의 방법

이상으로 우리는 미적 현상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북한 미학의 대강을 적어보았다. 아직도 발생이나 형태에 대한 설명이 남아 있으나, 지면관계로 생략기로 한다. 다만 예술의 발생을 사람의 사회적 생활과 분리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회적 요인에서 찾으려 한다든지, 예술의 분류에서도 인간과 그 생활을 직접·반영하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반영하는가에 따라 문학예술과 실용예술로 나누면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가극, 무용, 교예, 회화, 조각, 건축, 공예예술로 구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적어둬둬하다.

그중 교예는 우리가 서키스라고 부르는 활동으로서 북한에서는 이를 “육체적인 기교 동작을 형상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체험과 정서지향 등을 반영함으로써 사회교양적 기능을 수행하는 무대예술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즉, 그것은 “사람의 육체적 성장과 그 기능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며 용감성

과 인내성, 굳은 의지, 명량성과 낙천성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지난날 교예예술은 육체적 기능이 악용되어 엽기적이고도 기형적인 동작들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였으며, 이른바 <곡예>는 하나의 예술로서가 아니라 “착취계급의 저속하고 몰취미한 향락의 수단으로,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던” 반면, 주체 미학이론은 그것을 “사람들을 체육 문화적으로 교양하는 데서 큰 작용을 하도록” 발전시켰다고 자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 교예보다 체력 교예가 주목되는데, 그것은 전신운동에 기초하여 아름다운 조형미와 율동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조형교예, 민첩한 동작으로 수행되는 전희교예, 중심 교예등을 표현하는 전신교예(재주)와 신체의 부분적인 동작에 기초한 부분 재주를 포괄한다.

이러한 설명은 물론 예술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술을 창작하고 취급하는 데서 사람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근본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창작과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즉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 사상성과 예술성 결합의 원칙들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 다소간 주의를 요한다.

북한 미학이 말하는 예술적 방법은 세계관과 직결되는데, 이에 따라 사실주의 창작방법과 반사실주의 창작방법이 있게 된다. 존재와 사유의 상호관계에서 전자는 존재의 일차성을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사유의 일차성을 주장한다. 사실주의

와 낭만주의의 비교가 흥미로운데, 이때 낭만주의는 반사실주의의 한 표현으로서 불합리한 현실을 일정하게 비판하기는 하나 그 출로를 “현실과 떨어진 허황한 환상”에서 찾는 예술로 비판된다. 즉 그것은 사회적 모순을 노출시키는 한편, “생활의 비극적인 결과에 낭만을 대치시킴으로써 착취사회의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려고 한다”. 또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이 되지 못하고 주관적 항의에 머무른다”. 따라서 사람들을 현실로부터 이탈시킨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연주의가 비판되는데, 그것은 “사실주의의 외피를 쓰고 예술의 사상성을 말살하고 있다”. 그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현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며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왜곡하는 부르주아 문학예술의 주되는 조류”로서,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연만을 찬미하거나 사회 생활의 비본질적인 것을 나열함으로써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을 방해한다”.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 대신 감성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만을 나열하거나 부차적 의의를 가지는 현실들을 객관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예술의 사상성을 부정하며 예술의 인식교양적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그 반동성은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위한 투쟁을 거부하며 온갖 저속한 것들을 다 찬미하는 데 있다”고도 설명된다.

즉, 그것은 “현존하는 것은 동일한 의의를 가지며 모든 생활현상은 동일하게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도 투쟁도 없는 옹호자로, 변호자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선행한 노동계급의 이론으로서 물질일관성의 유물변증법에 기초한 예술사조이며 창작방법임에 반해, 북한의 문학예술은 유물변증법의 원리와 다른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는 설명의 뜻을 좀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그 대강은 앞서서도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쯤에서 매듭짓기로 한다. 다만 그것이 김일성이 밝힌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갖을 데 대한 원칙”으로서 “내용과 형식에서 인민대중의 계급적 요구와 자기 민족의 정서적 구미를 위주로 하여 세운 창작원칙”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적어두기로 한다.

그러나 창작에서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노동계급적인 내용, 사회계급적인 내용을 인민대중의 구미에 맞는 민족적 형식에 알기 쉽게 담아 그린다는 창작방법을 구체적인 사례, 특히 혁명가극에 비추어 살피는 작업이 불가피한데, 여기에서는 <리연상>, <최영화>등 지방의 문예이론가, 창작가, 예술인들이 참석하여 벌인 토론회(1987년 10월)를 하나의 사례로서 살피기로 한다.

이 토론회는 『가극예술에 대하여』라는 저작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바, 그 책은 “인류가극의 새시대, <피바다>식 가

극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가 총화되어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극예술이론의 대총서”라고 격찬된다. 즉 여기에는 가극창작사업에서 견지되어야 할 혁명적 원칙과 그 구현방도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북한예술을 다룸에 있어서 개별적인 작품들보다는 이 책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6. 혁명가극에서 본 실제 사례

이 책은 “가극혁명을 일으켜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참다운 가극을 창작하자면 혁명적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가극혁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원칙,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기 결합하기 위한 원칙, 가극창작에서 속도전과 집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등과 함께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들이 밝혀져 있다. 무엇보다도 가극혁명에서는 주체를 튼튼히 세워 종래 가극에서 엿보이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견해와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과 자기나라 혁명에 <복무>하고 자기 <인민의 구미와 정서에 맞는> 가극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낡은 가극의 반인민적 약점과 사상예술적 제한성을 정확히 가려보고,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며, 로동계급의 리념과 요구에 맞는 인

민적이며 혁명적인 가극”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속도전과 집체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지난날 몇몇 창작가들에 의해 산만하게 진행되었던 수공업적인 낡은 가극창조체계와 방법을 버리고 가극창조 사업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경지에서 힘있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풀이되었다. 이른바 5대혁명가극 창조사업은 이런 원칙을 제시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가 “몸소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빛나게 완수하신 것”이라고 강조된다.

5대혁명가극이란 곧 『피바다』, 『당의 참된 딸』,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를 말한다.

창작실천 과정과 연관된 설명을 요약한다면, 대충 다음과 같다.

첫째, 가극 혁명에서는 무엇보다도 가극 대본이 가극의 사상예술적 기초가 된다는 가극 대본의 지위와 사명에 대한 옳은 이해의 확립이 요청된다.

둘째, 가극음악은 <인민적인>인 것으로 개조되어야 한다. 좀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가극음악창작에서는 <절가화>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가화>란 예컨대 기독교의 찬송가 가사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창작가들이 유순하고 아름다운 민족적 선율을 가진 우리 식의 가극노래를 창작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세울 뿐 아니라, 형상단계에서 극성이 살아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세운다. 그렇게 해야 “『피바다』식 가극노래들은 모두가 민족적이면서도 가극의 극성을 강하게 조성하는

주체적인 우리식의 가극음악으로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종래의 가극음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식의 새로운 형식”이라면서 “방창”을 내세운다. 이는 주인공의 심정이나 배경상황들을 설명해주는 합창인데, 오케스트라석에서 노래부르기도 한다. 또한 종래의 가극 관현악 편성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악기에 양악기를 배합한 “주체적인 관현악 편성”이 도입되었는데, 여기에 이른바 민족악기의 개조가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5대 혁명가극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종래 가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으리만큼 절가와 방창에 기초하여 음악과 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이끌어주시었으며, 가극사상 처음으로 음악극조직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이라고 밝히고, 그 구현으로 창작가, 예술인들을 정렬적으로 이끌어 주심으로써 모든 가극작품들의 음악이 감정선을 타고 청중들의 가슴 속에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도록 하시었다”는 격찬이 유도된다.

일일이 적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이 책에는 “종래가극에서는 극 발전에 관계없는 형상수단으로 간주되던 무용과 미술을 가극의 극 발전과 주인공의 운명발전에 철저히 이바지하는 필수적인 형상수단”으로서 혁명가극이 종합예술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설명도 적지 않다. “가극은 무대예술의 모든 형태들을 포괄하고 있는 종합예술로서 한 나라의 예술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되며 무대예술전반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

다.” “가극은 시와 음악이 있고 무용과 미술도 있으니, 음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극적 묘사양식에 의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다방면적으로 폭넓게,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참된 삶과 투쟁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종합예술”이라는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북한 창작극의 주체를 세우는 것이 “문학예술건설과 창조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말을 바꾸면 “문학예술 건설과 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자기 인민의 감정과 비위에 맞게 자주적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 때에만 그 예술이 인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추동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로동계급이 창조하는 문학이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새시대의 문학, 예술이 문학적 중심에 세워야 할 공산주의적 인간전형의 풍모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으며 종자론을 비롯하여 문학예술창작이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문예이론에서 밝히지 못한 문제들에 완전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칭송되는 이 책에 담겨진 이론적 작업들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그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한다.

북한 연극 내지 예술을 있는 그대로 종합적으로 파악하자면, 적어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북한의 공연장소에서 이른바

5대혁명가극을 직접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겠지만, 적어도 필자에게 관심을 끄는것은 내용적 측면보다는 다분히 형식적 측면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성격은 다르지만 여러가지 형태의 공연들이 이른바 총체예술이라는 총칭아래 시도되고 있는 까닭에 북한에서 적용되는 <구현방도>들 중에는 우리의 작업을 위해 어떤 의미에서든 참고될 만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 조립되는 방식이 아니라 고작해야 그런 규칙들을 끊임없이 탐색해가고, 또 그런 규칙들이 세워질 경우에도 다시금 이를 묵종하기보다는 창의적인 대결을 통해 극복해 보려는 성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때로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태도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세계관적 기초로 하고 그 구성체계에서 문예사상, 문예리론, 문학예술지도 방법을 완전무결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하여 백과사전적 문예리론총서”로서 찬양되는 『가극예술에 대하여』의 지침들 역시 가능한 여러 견해들중 하나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어찌보면 당연하면서도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7. “대중문화” 비판

이처럼 집단주의적인 예술이론을 미화하는 한편, 자본주

의적 병폐의 한 예로 “대중문화”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퍼붓는다.

북한의 문화론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대중문화”를 반동적 부르조아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거세하고 창조정신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속물적인 소비심리와 얽기적인 취미를 주입하는 천박한 문화라고 규정한다. 즉 부르조아 이론가들은 이러한 대중문화가 사회의 문화생활에서의 민주화의 형식인 것처럼 떠들면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문화적 가치의 소비에서 사회적 차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그들이 말하는 대중문화는 근로인민대중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한 것도 아니고, 대중이 창조한 문화도 아니라, 단지 반동적 부르조아지가 자본주의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규범과 행동준칙, 가치평가기준을 근로자들에게 강요하는 문화적인 책략과 수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단 대중문화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에 반대하는 입장이 문화정책 전반에서 뚜렷하다.

노동계급의 문화는 자본가계급의 반동문화를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자기의 계급적 성격을 고수하고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되며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는데, 부르조아적 반동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계급적 근원이 청산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반대하는 것이 자본주의 반동문화와의 투쟁의 중요한 형식으로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적 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 규정되며, 이들은 문화적 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 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 타락하게 만들려고 책동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문화정세 파악에 따르자면, 특히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을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 침투에 각별히 힘을 쓰고 있다. 즉 초강대국들 간의 대립관계가 허물어지고 냉전이 종식되었으나, 역사의 전진운동을 저해하는 낡은 세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들은 변함없이 지배주의적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국주의적 사상문화적 공세는 낡은 세력의 지배와 약탈, 침략과 간섭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으며, 부르조아문화의 침습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공세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로 되고 있는, 이른바 “평화적 이행” 전략의 중요한 고리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화정세 파악은 특히 오늘날 낡은 세력들이 부르조아 반동문화를 지배와 간섭의 수단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비동맹국가들, 발전도상국들을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은 냉전구조가 붕괴된 오늘의 변화된 정세 하에서 그들의 세계전략의 주요 목표가 제3세계 나라들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서방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대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경각성을 높이며 그것을 막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이 걸린, 북한 사회주의의 사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결국 문화적 권리를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코자 하는 문제를 사회정의와 문화정책의 상호관계를 살피는 방식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이 글은 일단 매듭짓기로 한다.

V. 결론 : 사회 정의와 문화 정책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한 문화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그 질문은 다시금 일단 정의롭지 못한 사회상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여겨져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한 사회상태가 정의롭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정의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대체로 두가지 방향을 생각하게 된다. 첫째, 사회구성원 내지 사회지도자의 인생관 가치관에 변화를 일으켜 보자는 생각이고, 둘째, 이와는 달리, 이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규제력을 발휘하는 정치 사회 경제의 제반 조직들을 보다 바르게 또는 정의롭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다. 현대의 사회윤리 학자들은 대체로 후자를 선호한다.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와도 연결되

는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이유로써 내세운다.

첫째, 사회 문제는 개인 문제와는 달리 그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기보다는 사회적 원인의 극복 내지 제거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사회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양심적 각성이나 결단만에 의한 심정윤리 (Gesinnungsethik)에 의해서 추구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 된다. 개인이 선해지면 사회도 저절로 개선될 수 있다는 단순하고 안이한 낙관은 방법론적으로 볼 때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혼동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 윤리적 방법은 사회 제도나 구조 및 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인간이란 이타적 본능과 함께 이기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 기득권을 수호 유지하려고 하며, 또한 그의 상상작용으로 인해 무한히 확대되는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강력한 유혹에 사로잡혀 권력을 남용 악용하게 마련인데, 인간의 이러한 이기심은 인간관계가 집단적 관계일 때 더욱 강렬하고 가혹해진다. 이 경우, 국가권력을 분산하고 그렇게 분산된 권력이 서로 균형을 유지케 함으로써 상호견제 아래 남용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예컨대 의료문제의 해결같은 정책에 있어서도 몇몇 인도주의적 의사들의 무료치료라는 개인 윤리적 접근보다는 의료보험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 윤리는 정치적 방법의 사용에 의존한다. 예컨대 국민중 어떤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납세를 이행케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적 방법이다. 좀더 일반화 한다면, 국가조직이 채택된 가치를 국민들에게 강제할 힘을 결여하게 될 때, 그 국가는 더 이상 국가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려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도 대항력의 획득이라는 정치적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즉, “힘은 힘에 의해 도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끝으로 사회 윤리는 사회적 규범과 본질적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곧 사회의 이념 혹은 가치관에 따라서 제시하고 명령하는 규범이다. 여기에는 물론 사회 성원은 그같은 가치관 내지 이념을 통해서 또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사회 체제(system) 안에서 행동하고 역할을 수행한다는 가치론적 사회관이 전제되고 있다.

정의문제를 다룬 현대학자들 중에서 바람직한 사회가 갖추어야 할 첫째 덕목은 정의라는 믿음을 전제로 삼고 출발한 수정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사회윤리에서 찾는 입장과 통해진다. 바람직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과 풍부한 물질, 따뜻한 인정과 쾌적한 생활환경등 여러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기본구조와 여러 제도들이 정의의 원칙에 잘 부합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개인이 각각 자신의 삶을 본인의 뜻에 따라서 설계하고 그 설계의 실현을 추구함이 마땅하다는 전제가 무시되지 않는다. 다만 인

간은 사회 안의 존재인 까닭에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바라게 되고, 이 때에 생길 수 있는 이해 관계의 대립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다름아닌 사회 정의의 원칙이다.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이에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각 개인은 모든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한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 내지 경제적 불평등은 1)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후세를 위한 절약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2) 그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나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 두 원칙 사이에 우선 순위의 문제가 생겨날 것을 전제로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한 자유에 관한 첫째 원칙은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관한 둘째 원칙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따라서 자유의 제한은 오직 보다 큰 자유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관한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 또는 이익 극대화의 원칙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이 원칙들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기본적 가치는 자유로서, 되도록 많은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토록 소중히 생각되는 자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들”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개략적으로 말해서, 투표권과 공직에 대한 피선거권 따위의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인신(the person)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법으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체포나 구금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등이다. 요컨대 자유주의 국가들의 헌법이 자유조항에서 보장하는 그것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동시에 유엔이 1948년에 선포한 인권선언과도 거의 일치한다.

필자로서는 일단 앞에서 논의된 수정 자유주의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원리에 입각한 정책이 문화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가 문화적 자유 내지 권리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헌법상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본구조가 공정한 원칙을 따라서 짜여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제도가 같은 원칙에 따라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으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기본구조를 위한 규범을 밝히는 정의의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영역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코자 함에 있어서 우선 문화적 자유 또는 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학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순전히 그러한 학습과 인식이 있고서야 이를 위한 정의로운 문화구조나 제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남·북한은 아직 평화공존적 상태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따라서 통일문화에 대한 논의는 자칫 허구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남·북한의 미래는 성급하게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질성을 그 자체로 놓아둔 채 혹시 그것이 배타성을 벗어난 채 다원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중에 좀더 밝게 열릴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그와 같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작성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참고문헌〉

- 김문환, 『분단조국과 통일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북한문화연구』제1집.
1993. 필자는 특히 3대혁명론의 기술을 위해 여기에 수록된 다음 논문을 크게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춘길,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 3대혁명의 하나로서의 ‘문화혁명’ 정책을 중심으로”.
-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 총람』. 1993. 12.

통일교육용 자료(8종)

- | | |
|-------------------------------|-------------------|
| • 북한의 체제와 이념(공직자편) | 전인영(서울대 교수) |
| • 북한의 교육실상과 통일대비 교육과제(교직자편) | 박덕규(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 • 통일과 경제적 과제(상공인편) | 이상만(중앙대 교수) |
| • 북한경제와 주민생활(근로자편) | 이태욱(서강대 교수) |
| •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여성편) | 이은숙(서울대 교수) |
| • 대학생과 통일문제 이해(대학생편) | 한준상(연세대 교수) |
| •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이해(문화·예술인편) | 김문환(서울대 교수) |
| •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경찰·공안편) | 오문관(경찰대 연구관) |

문화·예술인편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이해

1995年 5月 5日 印刷

1995年 5月 10日 發行

發行處 統 一 院

教育弘報局 教育課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電 話 : 7 2 5 - 3 9 4 5

통교 95-4-23

<비매품>